



# 08

## CHAPTER

### 지속가능한 축산물 소비를 위한 해외 동물복지 정책 현황

<b>I. 배경</b>	<b>211</b>
1. 동물복지의 개념	211
2. 국내외 동물복지 현황	212
<b>II. 해외 동물복지 정책 현황</b>	<b>213</b>
1. 축산물 유형별 동물복지 정책	213
2. 동물복지 인증제도	217
3. 주요국 수입규제 및 통상이슈	219
<b>III. 시사점</b>	<b>221</b>



## 08 지속가능한 축산물 소비를 위한 해외 동물복지 정책 현황

- 동물과 식품(축산물)에 대한 윤리의식,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며 동물복지의 중요성 대두
  - \* 가축이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윤리의식 제고
  - \* 건강하지 않은 환경(밀집 사육 등)에서 사육된 동물은 스트레스와 각종 전염병에 취약해져, 동물복지는 식품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인식 확산
- 선진국은 축산물 생산 전 단계에 걸쳐 동물권 보장

육류	- 주요 축종(양돈, 육우, 육계 등)의 윤리적인 사육, 도축, 운송 관련 요건 존재 - (유럽연합) 축종(송아지·양돈·육계)별 보호를 위한 최소 표준을 규정하는 위원회 지침, 도축 시 동물 보호에 관한 이사회 규정, 운송 및 관련 작업 중 동물 보호에 관한 위원회 규정 - (영국) 주요 축종(양돈·육계·육우)별 농장동물 복지를 위한 권고 규정 - (미국) 인도적 도살법, 28시간법(살아있는 가축의 미국 내 운송 지침)
난류	- 산란계의 윤리적인 사육 요건 존재 - (유럽연합) 산란계의 복지를 위한 위원회 지침 - (영국) 산란계의 사육환경에 대한 환경식품농무부(DEFRA) 권고 사항
유제품	- 젖소의 윤리적인 사육 요건이 존재 - (영국) 젖소에 대한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복지 기준

- EU·미국은 수입 축산물에도 동등한 동물복지 요건을 적용하고자 함
  - \* (유럽연합) ①EU로 운송되는 가축의 윤리적 운송 요구 ②모든 가축의 케이지 사육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수입 축산물에 동등한 기준의 적용을 추진 중
  - \* (미국) 주(州)별로 동물의 공장식 축산,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는 법안 시행,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22년부터 공장식 축산, 케이지 사육을 통한 축산물의 생산, 유통(수입 제품 포함) 금지
- 축산업계에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 축산물의 생산 전 과정에 걸친 동물복지 개선 필요
  - \* 주요국의 수입 규제가 시행될 예정인 사육환경, 사육밀도에 대한 개선이 선결 과제로, 국내 기존 농가에 ①시설개선비 ②제도적 유예기간 ③동물복지 관련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
  - \* 동물복지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동물복지의 실천이 농가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 구축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 I 배경

## 1. 동물복지의 개념

-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동물복지는 동물이 자연 본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본래의 습성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
  -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FAWC)에서 정의한 동물의 5대 자유에 근거하여 동물복지를 정의

〈표 I-1〉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FAWC)에서 정의한 동물의 5대 자유

항목	주요내용
① 배고픔과 영양불량,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 동물이 건강과 활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선한 물과 먹이로의 용이한 접근성을 유지하고,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해야 함
②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 동물이 편안함을 느끼는 휴식처와 보금자리 등 적절한 환경을 유지해야 함
③ 통증, 상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 질병의 예방·진단·치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④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 동물이 스트레스 및 기타 정신적 고통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야 함
⑤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 자연 본연과 유사한 환경(충분한 공간, 적절한 시설, 무리 속에서의 어울림 등)을 제공해야 함

\*출처: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FAWC, The Farm Animal Welfare Council)

- 과거 축산업은 단순 경제성 및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가축을 사육·도축하였으나, 윤리 및 식품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로 동물복지의 중요성 대두
  - 동물이 고통, 불안, 기쁨을 느끼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사육되는 가축의 동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윤리적 인식 확산
  - 또한, 건강하지 않은 환경에서 사육된 가축은 각종 질병에 취약해져 동물복지가 식품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인식하기 시작
    - OECD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농지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사육밀도 증가가 고병원성 가축 질병의 주요한 발병 원인으로 지목<sup>103)</sup>

103) Producer Incentive in Livestock Disease Management – Korea Case Study, OECD(2017.04.27.)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 2. 국내외 동물복지 현황

-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sup>104)</sup> 인증제를 중심으로 동물복지 정책이 활성화되는 추세
  - 2012년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제를 시작으로 양돈(2013년), 육계(2014년), 육우·젖소·염소(2015년), 오리(2016년)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확대 적용
  - 2020년 우리나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취득한 농가는 총 297개소로, 전년 대비(262개소) 13.3% 증가했으나, 전체 농장 중 동물복지 인증농장의 비중은 높지 않은 편
    - 축종별 인증취득 농장 수는 산란계 168개소, 육계 97개소, 양돈 19개소, 젖소 13개소 순
    - 전체 농장 중 동물복지 인증농장의 비중은 산란계 17.9%, 육계 6.1%, 양돈 0.3%, 젖소 0.2%로 나타남
  
-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과거부터 축산물 생산 단계에서 동물권을 보장, 동물복지 규정을 수입 축산물에도 적용하려는 동향을 보임
  - (영국) 1822년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 2000년 농장동물 복지를 위한 권고 규약을 발표하며 산란계, 육계, 돼지, 소 등 모든 가축에 대한 복지 지침 설정
  - (미국) 1873년 첫 동물복지법(28시간 법) 제정, 이후 인도적 도축법, 주(州) 단위의 가축 사육환경 관련 동물복지법 제정
    - ‘28시간 법’은 살아있는 동물 운송 시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동물복지법
    - ‘인도적 도축법’은 도축 과정에서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
    - 이 외에도 주(州) 단위의 사육환경 관련 동물복지 규정 존재
      - 캘리포니아 등 동물복지에 선도적인 지역은 원산지를 불문하고 공장식 축산<sup>105)</sup> 또는 케이지 사육<sup>106)</sup>으로 생산된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금지할 예정(2022.01.)
  - (유럽연합) 1986년 산란계에 대한 최초의 동물복지 규정 시행 이후 규정 적용대상을 송아지, 돼지, 육계로 확대하였으며, 현재 모든 가축으로 복지 대상을 확대하고자 시도 중
    - 동물복지 사육에 국제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유럽산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수입 축산물에도 동일한 동물복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제출(2021.06.)

104) 국가에서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제공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축산농장

105) Factory Farms, 최소비용으로 축산물 생산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동물을 밀집 사육하는 축산의 형태

106) 좁은 철제 감금 틀에서 가축(주로 산란계)을 사육하는 방식

## II 해외 동물복지 정책 현황

### 1. 축산물 유형별 동물복지 정책

- (육류) 주요 육류 소비 축종인 돼지, 소, 닭 등 가축의 윤리적인 사육, 도축, 운송과 관련한 요건
- (난류) 난류 생산을 위해 기르는 산란계의 윤리적인 사육 요건
- (유제품) 유제품 생산을 위해 기르는 젖소의 윤리적인 사육 요건

#### 가. 육류

- 돼지, 소, 닭 등 육류로 소비되는 주요 가축의 사료 배급, 최소면적, 출산 등과 관련된 농장사육 지침 존재
  - (유럽연합) 송아지와 돼지, 육계에 대한 농장사육 지침 보유

송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후 8주 이후 좁고 사방이 막힌(confined) 개별축사에서 사육할 수 없음</li> <li>· 특수한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 송아지를 밧줄에 매어두는 행위가 금지됨</li> <li>· 송아지의 생리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료를 배급해야 하며, 제공되는 사료는 충분한 양의 철분을 함유해야 함</li> <li>· (원문) 송아지 보호를 위한 최소 표준을 규정하는 위원회 지침 2008/119/EC</li> </ul>
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돼지를 밧줄로 매어두는 행위가 금지됨(교미 후 4주부터 출산예정일 1주 전까지의 암돼지는 예외)</li> <li>· 돼지 사육장은 돼지 본연의 습성(rooting<sup>107)</sup>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li> <li>· 돼지 사육장을 관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교육을 제공하는 등 동물복지와 관련한 전문성 제고</li> <li>· (원문) 돼지 보호를 위한 최소 표준을 규정하는 위원회 지침 2001/88/EC</li> </ul>
닭(육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계의 사육밀도를 최대 33kg/m<sup>2</sup>로 설정</li> <li>· 조명, 짚, 사료, 환기시설의 개선을 통해 육계의 사육환경 전반을 개선</li> <li>· (원문) 육계 보호를 위한 최소 표준을 규정하는 위원회 지침 2007/43/EC</li> </ul>

- (영국) 주요 축종별 사육환경에 대한 권고 사항 존재
  - 환경식품농무부(DEFRA)에서 「농장동물 복지를 위한 권고 규약」을 통해 주요 축종(돼지, 육계, 육우 등)별 동물복지 권고 사항을 명시

107) 코로 땅을 파서 탐색하고, 먹이를 찾는 돼지의 습성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의 사육장(일반사항, 바닥, 환기, 돼지의 생애주기별 적정 온도, 조명과 소음, 자동화 장비), 사료와 식수 배급 관련 권고 사항으로 구성</li> <li>- 돼지 사육장은 돼지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지 않는 형태여야 하며, 돼지의 성별, 나이(개월 수)에 따라 적절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함</li> <li>· <b>(원문) Code of Practice for the Welfare of Pigs, DEFRA(2020)</b></li> </ul>
닭(육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계의 사료와 식수, 사육환경 점검, 축사(일반사항, 통풍과 온도, 조명, 깔짚, 사육밀도, 실외 방목 시 요구사항)와 관련한 권고 사항으로 구성</li> <li>- 육계의 최대 사육밀도는 33kg/m<sup>2</sup>로 설정</li> <li>· <b>(원문) Code of practice for the welfare of Meat Chickens and Meat Breeding Chickens, DEFRA(2016)</b></li> </ul>
소(육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우의 사료와 식수, 유형별 사육장(벧짚 축사, 칸막이 축사, 일반 축사), 임신과 분만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 구성</li> <li>- 소가 자유롭게 눕고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칸막이 축사의 경우 한 마리당 최소한 한 칸의 축사를 제공해야 함</li> <li>· <b>(원문) Code of Recommendations for the Welfare of Livestock: Cattle, DEFRA(2010)</b></li> </ul>

□ 윤리적인(가축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의 도살 중요시

- **(유럽연합)** 도축 시 동물 보호에 관한 이사회 규정(108)을 통해 도축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함
  - 동물은 도살 및 관련 작업 중에 피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지 않아야 하며, 사업자(도축업자)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
    - 가축은 반드시 기절시킨 후에 도살해야하며, 기절 방법, 기절시키기 위한 장비와 시설은 본 규정에 부합해야 함
    - 윤리적 도살을 위해 도살자는 동물을 기절시키고, 도축하는 전 과정에 대한 적절한 능력을 보유함을 증명해야 함(도살자는 자격증명서 필요)
- **(미국)** 인도적 도살법(Humane Slaughter Act)을 통해 가축의 도살이 인도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함을 명시
  - 가축(소, 송아지, 말, 노새, 양, 돼지 등)을 도축하기에 앞서 총격, 전기충격, 화학적 수단을 통해 빠르고 효과적으로(일격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야 함
    -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 후 족쇄를 채우거나, 매달거나, 베는 등의 도축 활동이 허용됨

108) 도축 시 동물 보호에 관한 이사회 규정 - (EC) No 1099/2009

- 날카로운 도구로 경동맥을 끊어 동물이 빠르게 의식을 잃게 하는 유태교나, 기타 종교에 따른 도살 방법 역시 허용됨

□ ‘살아있는 가축의 운송 지침’으로 장시간 운송 시 가축이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 (유럽연합) 운송 및 관련 작업 중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위원회 규정 (EC) No 1/2005을 통해 운송 과정에서 동물에게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sup>109)</sup>
  - 역내 운송되는 동물뿐만 아니라, 역외에서 유럽연합으로 운송되는 동물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도축용 가축의 수출 시 해당 규정의 준수가 요구됨
- (미국) 28시간 법(Twenty-Eight Hour Law)을 제정하며 미국 영토 내에서 운송되는 동물의 운송요건을 명시
  - 동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는 미국을 경유하거나, 미국 내에서 동물을 운송할 때, 동물을 하차시키지 않고 연속 8시간 이상 감금할 수 없음
    - 동물을 주기적으로 하차시킨 후 사료 배급, 급수, 휴식 등을 제공해야 하며, 휴식시간은 최소한 연속 5시간 동안 유지되어야 함

## 나. 난류

□ 명확한 사육지침을 통해 난류(주로 달걀) 생산을 위해 기르는 산란계의 윤리적 사육 권고

- (유럽연합) 산란계의 복지를 위한 위원회 지침<sup>110)</sup> 공시
  - 사육장 유형에 따른 사육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닭 한 마리당 최소 750cm<sup>2</sup>의 공간을 제공해야 함
  - 모든 닭에게 동지가 제공되어야 하며, 닭 한 마리당 15cm의 햇대 공간이 제공되어야 함
  - 이 외에도, 닭이 습성에 따라 자유롭게 쪼거나 파헤칠 수 있는 깔짚과 먹이가 제공되어야 하며, 닭이 먹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109) 상세 내용은 본 보고서 5페이지 참조

110) 산란계 보호를 위한 최소 표준을 규정하는 위원회 지침, 1999/74/EC

-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에서 산란계의 사육환경에 대한 권고 기준을 정함
  - 산란계의 사료와 식수, 질병 치료, 사육환경 점검, 수용밀도, 축사 유형별 규격, 통풍 및 온도, 조명, 깔짚 등과 관련한 권고 사항으로 구성
    - 2012년부터 케이지(conventional cages) 내 사육이 금지되었으며, 비(非)케이지 non-cage) 사육, 방목 사육(Free Range) 등이 허용
    - 산란계 한 마리당 모서리가 없는 최소 15cm의 헛대가 제공되어야 하며, 최소 250cm<sup>2</sup>의 깔짚이 깔린 개별 공간이 제공되어야 함

## 다. 유제품

### □ 우유 생산을 위해 사육하는 젖소의 윤리적 사육방법에 대한 기준 공시

- **(영국)** 젖소에 대한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sup>111)</sup>의 복지 기준 운영<sup>112)</sup>
  - 젖소와 송아지의 사료와 식수 배급, 사육환경 관리(축사, 조명, 착유실<sup>113)</sup>, 울타리, 온습도), 설비 및 사육장 관리, 건강검진 및 치료, 도축에 대한 지침으로 구성
    - 젖소는 깨끗한 물과 균형 잡힌 영양소를 함유하는 사료를 배급받아야 하며, 사료는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양이 제공되어야 함
    - 젖소의 체중에 따라 적합한 넓이의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함
    - 모든 젖소는 매일 최소 4시간 초원을 배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매일 6시간이 적합함
- **(뉴질랜드)** 정부 차원에서 「젖소복지법」 발행<sup>114)</sup>
  - 젖소의 사료와 식수 배급, 행동 욕구(behavioral needs) 존중, 사육환경 관리(축사, 농장 시설, 온습도), 착유 등 농사 활동의 윤리지침, 건강검진 및 치료에 대한 지침으로 구성
    - 젖소의 생리학적 상태, 나이, 성별, 크기(체중), 성장 속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유형의 사료를 적절한 양으로 배급해야 함
    - 젖소 본연의 습성에 따라 걷고, 돌고, 누울 수 있는 공간에서 사육해야 함

111)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영국에서 동물복지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특별 사법권을 보유

112) RSPCA welfare standards for dairy cattle(2021)

113) milking parlour, 젖소의 젖을 짜는 시설

114) Code of Welfare: Dairy Cattle(2019), New Zealand Government

## 2. 동물복지 인증제도

□ 해외 동물복지 인증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기보다 민간단체 또는 식품기업이 주도적으로 자체 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형태가 주를 이룸  
 - 일부 민간단체, 업체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운영

- (유럽연합) 회원국의 동물보호협회에서 동물복지 인증을 발급, 회원국 간 통용되는 동물복지 라벨을 도입 중
  - 대표적인 동물복지 인증으로 네덜란드 동물보호협회에서 발급하는 Beter Leven 인증 존재

〈표II-1〉 네덜란드 Beter Leven 인증

인증마크	주요 내용	
	인증명	Beter Leven
	담당기관	네덜란드 동물보호협회 Dierenbescherming
	발급 대상	육류, 유제품 등 동물성 제품 전반
	발급 조건	· 가축의 사육면적, 사육 체중, 외부 사육장과 방사장의 유무, 사육품종의 지속가능성, 조명, 도축방법, 운송시간에 따라 총 3가지 등급으로 나누는 Beter Leven 인증을 발급 - 별의 개수가 많을수록 동물친화적임을 의미(최대 3개), 유기농 환경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는 최고의 복지를 의미하는 별 세 개를 표시함

\*출처: [beterleven.dierenbescherming.nl](http://beterleven.dierenbescherming.nl)

- 이 외에도, 유럽연합은 동물복지 라벨 도입에 합의(2020.12.)
  - 유럽연합 농업장관이사회(115)는 유럽연합에서 통용되는 동물복지 라벨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법안 제출을 앞두고 있음
  - 라벨 부착의 주된 목적은 유럽연합 내에서 통용되는 라벨을 통해 상품 제조에 사용된 동물의 사육, 운송, 도축 환경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임

115) EU agricultural ministers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 제도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 동물복지 요건을 충족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세 내용은 협의 중

□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의 기준을 충족하는 축산물에 RSPCA Assured 인증 부착 허용

〈표II-2〉 영국 RSPCA Assured 인증

인증마크	주요 내용	
	인증명	RSPCA Assured
	담당기관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RSPCA
	발급 대상	닭(육계·산란계), 소(젖소·육우), 돼지, 연어·송어, 칠면조 제품
	발급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SPCA의 농장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인증 발급</li> <li>- 동물의 상태, 사육환경, 농장 기록 검사를 통해 RSPCA 동물 복지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li> </ul>

□ (미국) 농무부(USDA)에서 승인한 동물복지 식품 인증 라벨인 Animal Welfare Approved by AGW 인증 운영

〈표II-3〉 미국 Animal Welfare Approved by AGW 인증

인증마크	주요 내용	
	인증명	Animal Welfare Approved By AGW
	담당기관	AGW(A Greener World)
	발급 대상	소와 송아지, 젖소와 송아지, 돼지, 양, 염소, 산란계, 육계, 칠면조, 거위, 들소 제품 등
	발급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류, 유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기르는 가축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인증으로, 동물의 사육, 운송, 도축에 대한 AGW 표준을 준수 할 경우 인증 발급</li> </ul>

### 3. 주요국 수입규제 및 통상이슈

□ 동물복지 무역규제가 시행된 대표적인 사례는 ①유럽연합의 살아있는 동물의 운송요건 ②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케이지 사육 가축(축산물 포함)의 주(州) 내 유통 금지 등  
 □ 유럽연합 역시 가축의 케이지 사육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며, 수입 축산물에 동등한 기준(케이지 사육 금지)을 적용하는 수입규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임

- (유럽연합<sup>116</sup>) 동물 운송 시 「운송 및 관련 작업 중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위원회 규정」 준수
  - 동물을 유럽연합으로 운송할 경우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송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본 요건은 가축, 애완동물 등 경제적 목적으로 판매되는 척추동물에 적용되며, 이를 취급하는 시장, 유통센터, 도살장 운영자는 아래 요건을 준수해야 함

**(참고) 유럽연합의 살아있는 가축 수입(운송) 시 준수요건**

- 동물이 운송에 적합한지 확인
- 운송 전 과정을 적절하게 계획하고,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운송이 완료되도록 준비
- 운송 중 동물을 상시로 확인하고, 물, 사료, 휴식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동물의 부상 및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 적재 및 하역시설을 설계, 건설, 유지
- 동물을 다루는 사람이 관련하여 충분히 훈련을 받았고, 유능한지 확인(불필요한 폭력 등이 금지)
- 동물에게 충분한 면적(바닥 면적, 케이지의 높이)을 제공

\*주: 「운송 및 관련 작업 중 동물 보호에 관한 위원회 규정: (EC) No 1/2005」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원문 참조

- (유럽연합) 가축의 케이지 사육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수입 축산물에도 동등한 동물복지 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 중(2021)
  - 유럽의회<sup>117</sup>)는 가축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도록 일반 농업 지침<sup>118</sup>)의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2021.06.)

116) 영국을 포함함 -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후에도 살아있는 동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관련 법령 「운송 및 관련 작업 중 동물 보호에 관한 위원회 규정 - (EC) No 1/2005」을 유지하겠다고 정부 홈페이지에 공시

117) European Parliament

118) EU General Farming Directive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주요 내용은 영계, 토끼, 메추라기, 오리, 거위 등 역내 소비되는 모든 가축의 케이지 사육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여, 2027년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
    - 현재(2021년 12월) 닭(산란계, 육계), 돼지, 송아지는 이미 유럽연합의 동물복지 규정에 의거, 케이지 사육이 금지됨
  - 해당 결의안은 수입 축산물에도 동등한 조건(케이지 사육 금지)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
    - 유럽의회는 ‘수입 축산물에도 동등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동물복지에 대한 유럽연합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전 세계 생산자의 동물복지 수준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
- (미국) 공장식 축산 또는 케이지 사육을 통한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주(州) 단위로 시행
-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장식 사육 및 케이지 사육된 가축의 주 내 유통을 금지하는 발의안<sup>119)</sup> 통과(2018)
    - 산란계, 암돼지, 송아지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며,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산란계) 2020년까지 암탉 한 마리당 최소 1제곱피트의 공간을 제공
      - (송아지) 2020년까지 송아지 한 마리당 최소 43제곱피트의 공간을 제공
      - (암돼지) 2022년까지 암돼지 한 마리당 최소 24제곱피트의 공간을 제공
  - 해당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원산지를 불문하고 케이지 사육된 축산물은 캘리포니아주 내 유통이 금지됨
- 아직까지 동물복지 인증, 라벨을 사용한 통상규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법안이 속속 발의되며 동물복지 규제가 향후 수입 축산물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

---

119) Farm Animal Confinement Initiative

### III 시사점

- 국내외 소비자의 동물권, 식품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로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 요구
  - 동물이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인식되면서, 건강한 환경에서 사육, 운송, 도축된 축산물이 윤리적으로 건강한 식품이라는 인식 확산
  - 이에 단순 경제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축을 사육하던 기존의 축산 관행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제기되며, 축산업 종사자의 윤리적 책임 확대
  
- EU·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과거부터 동물의 사육, 도축, 운송 과정에서의 동물복지 지침을 발표·시행, 수입 축산물에도 동등한 동물복지 요건을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임
  - (유럽연합) 수입 축산물에 자국과 동일한 동물복지 요건을 적용하게 하는 결의안을 추진 중으로, 동물복지 개선에 국제사회의 참여를 요구
    - 해당 결의안은 2021년 6월 제출되었으며, 결의안 통과 시 2027년까지 케이지 사육을 통한 모든 가축의 생산과 유통(수출 포함)이 금지됨
  - (미국) 일부 주(州)에서 공장식 축산 또는 케이지 사육으로 생산된 축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주(州) 법을 시행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존중하지 않는 축산물의 수입을 제한
    - 해당 법은 2022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 주(州)로 축산물 수출 시 관련 주(州)법에 유의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선도국 대비 동물복지의 중요성을 늦게 인식한 편이며, 농가 비용 부담 등으로 동물복지 개선이 더딤
  -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부터 농장 가축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동물복지 정책(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이 시행
    - 영국은 1822년, 미국은 1873년, 유럽연합은 1986년 동물복지의 개념을 인지하고 식용 가축에 대한 동물복지 규정을 시행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 농가 비용 부담, 제도의 홍보 부족으로 국내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비중 역시 저조
  - 2020년 우리나라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비중은 산란계 17.9%, 육계 6.1%, 양돈 0.3%, 젖소 0.2%로 나타남
  
- 해외시장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 축산물의 생산 전 과정에 걸친 동물복지 개선 필요
  - 특히, 사육환경과 사육밀도(케이지 사육 금지 등)에 대한 선도국의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스톨 사육제한, 케이지 사육 제한 등 국내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 필요
    - 기존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환경의 개선을 강제하기에 앞서, 시설개선비, 제도적 유예기간, 동물복지 관련 교육 제공 등 지원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축산물의 생산 전 과정(사육, 도축, 운송)에 걸친 주요국 규제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규제에 상시 대비해야 함
  - 이 외에도, 동물복지 실천 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해 국내 소비자의 동물복지 이해도 제고, 동물복지 축산물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컨설팅 및 판촉활동의 지원 역시 고려해볼 수 있음
    - 동물복지의 실천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성, 농가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	[시론] 축산업에서의 동물복지, 농민신문(2021.09.29.)
2	국내 동물복지 정책 동향, KREI 세계농업 제163호(2014)
3	동물복지 국내·외 현황 및 전망, KISTI 산업계동향(2019.05.)
4	"더 비싸도 '가치소비' 합니다"...동물복지 축산물 관심 'UP', 팝콘뉴스(2021.02.05.)
5	동물복지농장, 밀집사육보다 경제효율성 더 높다, 한겨레(2017.10.09.)
6	가축이 건강해야 먹거리 안전... '동물 복지' 첫 발 떴다, 세계일보(2017.10.12.)
7	EU official: Imposing animal welfare standards on imports would be WTO compliant, EURACTIV (2021.03.24.)
8	The EU and the US pave the way for a ban on cages imposed on imported food, EUROGROUP FOR ANIMALS(2021.06.11.)
9	European Parliament urges to ban the caging of farmed animals!, EUROGROUP FOR ANIMALS (2021.06.10.)
10	유럽연합, 케이지 사육 금지법 마련...닭·토끼·오리·거위 나올까, 한겨레(2021.07.01.)
11	EU, 2027년까지 우리에서 가축 사육하는 시대 끝낸다, 램인터내셔널(2021.06.02.)
12	캘리포니아 주민들 "공장식 사육 농가 축산물 소비하지 않겠다", 더나은미래(2021.08.17.)
13	Ministers approve blueprint for animal welfare label, verdict still out on nutritional labels, EURACTIV(2020.12.18.)
14	EU 이사회, EU 차원 동물복지 라벨 도입에 합의...영양성분 라벨은 이견, 한국무역협회 무역통상정보(2020.12.18.)
15	RSPCA Science Group(science.rspca.org.uk)
16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
17	영국 정부 홈페이지(www.gov.uk)
18	EU법령포털 EUR-LEX(eur-lex.europa.eu)
19	Animal Welfare Institute(awionline.org)
20	AGW: A Greener World(agreenerworld.org)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